

●산림청고시 제2023-111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(공익용, 임업용)산지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산림청장

보전산지 지정 고시

1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,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)

가. 보전(공익용)산지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충청남도	계룡시	공주089	NJ52-13-19-089	공익용산지
전라북도	고창군	고창006	NI52-1-17-006	공익용산지

나. 보전(임업용)산지

행정구역의 명칭		도면의 명칭	도엽의 번호	구역의 표시
경기도	고양시일산동구	서울014	NJ52-9-11-014	임업용산지

※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산지관리법」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 및 토지이음 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. 열람장소

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·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부 칙

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.